

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월 일
발 의 자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유아보육법령 개정(2013. 6. 4. 및 2013.12. 5.)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며, 보육정보센터를 「육아종합지원센터」로 변경하고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의 기능 확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정비
(안 제2조, 제6조, 제24조~29조, 제33조) : [법 제7조 \[개정 2013. 6. 4.\]](#)
- 나. 법 위반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로 지도감독 강화 (안 제23조의2)
: [법 제49조3 \[본조신설 2013. 6. 4.\]](#)
- 다. ‘종사자’ 명칭을 ‘직원’ 으로, “보육시설” 명칭을 “어린이집”으로 변경 (안 제2조, 제3조, 제26조) : [개선사항](#)
- 라. 그 밖에 “영유아 보육법령”에 맞추어 조례내용 일부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영유아보육법, 같은법 시행령·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
- 예산조치 : 비 예 산
- 합 의 : 해당 없음
-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15. 2월(20일)
 - 2) 입법예고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 - 3) 비용추계서 작성 : 별지첨부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제5호 중 “종사자”를 “직원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·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의 본문 중 “영유아 및 아동”을 “영유아”로 하며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8호를 제10호로 변경하고, 같은 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
9.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위반사실의 공표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, 위반행위,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,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, 제25조의7을 준용한다.

제4장 제목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4조 본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5조 본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 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- 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
같은 조 제7호와 제8호를 삭제하고,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9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
같은 조 제10호를 제12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
- 11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
같은 조 제12호 중(현행 10호) “보육과 관련하여” 를 “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” 로 한다.

제26조 본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 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종사자들” 을 “직원들” 로 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운영위원회)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1.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, 보육교직원,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, 운영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8조 제1항 본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 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.” 를 “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·세출 예산서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같은 조 제4항(현행 제3항) 중 “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” 를 “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29조 본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 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 로 한다.

제33조 제6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 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 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중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라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“보육정보센터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·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라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<u>직원</u>을 말한다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“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<u>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·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책임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책임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호자와 더불어 <u>영유아</u>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<u>어린이집</u>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설치) (생략)</p>	<p>제4조(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기능)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</p> <p>8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	<p>제6조(기능)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사항</u> <u>9.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</u> <u>10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
<p>제7조 ~ 제23조 (생략)</p>	<p>제7조 ~ 제23조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 <p>제4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</p> <p>제24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보육정보센터(이하 "보육정보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고 한다)제12조에 따른다.</p> <p>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(기능)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<u>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</u> 5. (생략) 6. <u>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</u> 7. <u>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</u> 8. <u>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</u> 9. <u>시간제보육시설, 육아카페, 장난감 대여점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</u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10.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26조(구성)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,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,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23조의2 (위반사실의 공표 등)</p> <p>① <u>구청장은 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, 위반행위,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,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, 제25조의7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4장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</p> <p>제24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의 설치기준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고 한다)제12조에 따른다.</p> <p>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를 보육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(기능)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</u> 7. <u>삭제</u> 8. <u>삭제</u> 9. <u>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</u> 10. <u>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</u> 11. <u>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</u> 12. 그 밖에 <u>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</u>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제26조(구성) ①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,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, 그 밖의 <u>직원을</u> 둘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<u>보육정보센터</u>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<u>보육정보센터</u>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27조 (생략)</p>	<p>②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.</p> <p>제26조2(운영위원회)</p> <p>① <u>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1.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</p> <p>② <u>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, 보육교직원,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,</u></p> <p>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, 운영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</u></p> <p>⑥ <u>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⑦ <u>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27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이용료 등) ① 구청장은 <u>보육정보센터</u>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<u>연회비 및 이용료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③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~ 6. (생략)</p>	<p>제28조(이용료 등) ① 구청장은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<u>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~ 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비용)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·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지원한다.</p>	<p>제29조(비용)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지원한다.</p>
<p>제30조 ~ 32조 (생략)</p>	<p>제30조 ~ 32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비용의 보조 등) 법 제36조 및 영 제 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33조(비용의 보조 등) 법 제36조 및 영 제 2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
<p>1. ~ 5. (생략) 6. <u>보육정보센터</u>의 설치 및 운영비 7.~10. (생략)</p>	<p>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7.~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 ~ 제38조 (생략)</p>	<p>제34조 ~ 제38조 (현행과 같음)</p>

관 련 법 령

영유아 보육법령 등	
<p>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영유아(영유아)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8.4.></p>	
<p>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12.19></p> <p>3. "보육시설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5. "보육시설종사자"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<u>보육시설의 장</u>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.</p>	<p>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12.19, 2011.6.7></p> <p>3. "<u>어린이집</u>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p>5. "<u>보육교직원</u>"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<u>어린이집의 원장</u>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</p>
<p>법 제7조(보육정보센터)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·구청장은 <u>지방보육정보센터</u>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<u>보육정보센터</u>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</p>	<p>법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<u>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</u>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</u>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3.6.4.></p>
<p>법 제4조(책임)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개정 2013.1.23.></p>	
<p>같은법 시행령 제7조(보육정책위원회)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삭제 <2012.6.29.> 2.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.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. 다만,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<u>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</u>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. 4. <u>법 제21조제2항제2호</u>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.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.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. <u>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</u> 	
<p>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5조(기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<u>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</u> 	

영유아 보육법령 등

법 제49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, 처분내용,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,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(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)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, 정도,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
2.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, 정도,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6(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) ① **법 제49조의3제1항**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.

- ② 법 제49조의3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하였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
 2. 위반행위의 내용
 3. 행정처분의 내용 [본조신설 2013.12.4.] 7

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7(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(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각 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

1의2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(教具)의 제공 또는 대여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(脆弱保育)에 대한 정보의 제공
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영유아 보육법령 등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08.11.13.)

1.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센터등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등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관계공무원

2. 보육교직원

3.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센터등의 장이 되며,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.